

튼튼한 기업, 활기찬 시장, 행복한 소비자

알기 쉬운 대규모소매업고시

백화점 · 대형할인점 · TV홈쇼핑 · 인터넷쇼핑몰이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반품**하다.



계약기간중에 **수수료**를 **인상**하다.



사전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다.



매입한 상품대금을 **깎고** 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다.



적극적인 신고가 **유통거래질서 확립**의 **초석**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운용하고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실태조사와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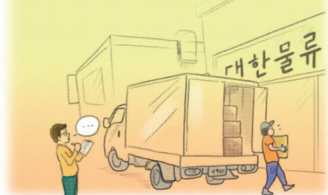
※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서면실태조사와 신고포상금제의 주요대상인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대규모소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행위 유형별로 만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조사표를 작성할 때 설문 내용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답변의 **공정성**을 높이고 특히, 구매·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규모소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예시)

1.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수령을 지연·거부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대금을 감액하거나 판매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3. 할인 행사 참여를 강요하거나 통상적인 납품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대규모소매업자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사전 약정 없이 광고비, 경품비 등 판촉비용을 부담 시키거나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대규모 소매업자의 고유 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
6.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
7. 납품업자의 중요한 매출정보를 이용한 판촉행사 강요 등 경영 간섭행위
8. 계약서를 사후에 교부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반품하다



②계약기간 중에 수수료를 인상하다



③ 사전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다



한달 후, OO마트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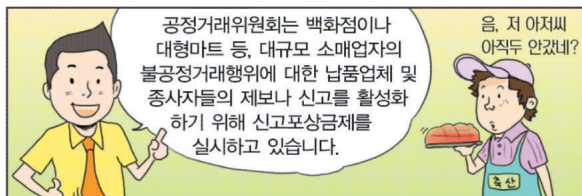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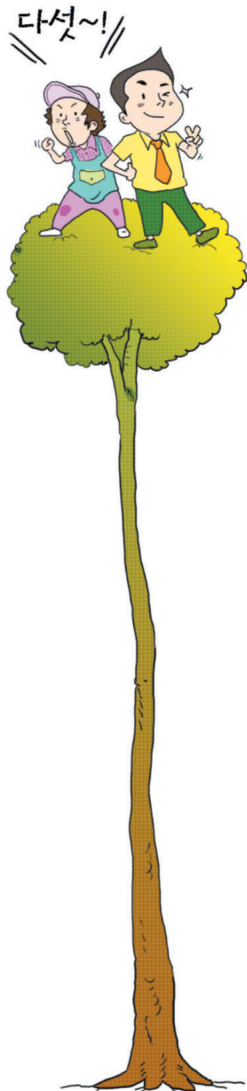
세~!!



④ 매입한 상품대금을 깎고
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다



⑤ 적극적인 신고가
유통거래질서 확립의
초석이 됩니다



조치수준	지급기본액	지급금액
과징금 부과	① 과징금 5억원 이하 : 5% ② 과징금 5억원 초과~50억원 : 3% ③ 과징금 50억원 초과 : 1%	증거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의 최상 : 100% 상 : 80% 중 : 50% 하 : 30%
시정명령	100만원	} <한도> = 1억원 지급
경 고	5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엄격하게 비밀을
준수하고 있사오니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수도권 · 강원권 : 서울사무소(02-3140-9626)
- 부산 · 경남권 : 부산사무소(051-460-1024)
- 대구 · 경북권 : 대구사무소(053-742-9147)
- 호남 · 제주권 : 광주사무소(062-975-6812)
- 충청권 : 대전사무소(042-481-8010)



홈페이지( www.ftc.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